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48
----------	-----

2024. 11. 26.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6.)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도시환경국장 )

-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5조)
- 다.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문화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9조)
- 라. 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11조)
- 마.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 사항 없음

(1) 입법예고(2024. 09. 13. ~ 2024. 10. 3.) : 특이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노력

-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정상회의(UNCED)에서는 생물 종 감소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 다양성 보전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음.
-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정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행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있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 2001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수목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수목원 조성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정원 조성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5년 정부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이 때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정원진흥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2016년 서울특별시는 수목원정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심 지역에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관리정책을 수립하고자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19년 5월 서울특별시는 중구,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정원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일시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함.

- 서울특별시는 이후 조례에 남아있는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일괄정비하여 개선하였음.

##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목적)은 이 조례가 수목원정원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임을 나타내는 규정임.
-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원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원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 >

위임사항	상세내용
정원의 구분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른 정원의 구분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b>지방정원</b> - 일정한 주제를 가지는 정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b>주제정원</b>
정원의 입장료	지방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금지행위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지행위를 정함)

- 그 밖에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사항 >**

위임사항	상세내용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 비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정원 조성 비용 지원 받음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정원의 운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창업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박람회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정원 전문가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음.

- 이번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표] 하단에 □색상 표시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이 조례가 i)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ii)자치법규에서 규율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고, iii)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sup>1)</sup>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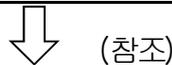
1) 법제처, 2022. 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7.

조례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다듬어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서 정하는 표현방법은 자치법규 입법례<sup>2)</sup>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함.

< 목적 규정 비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㉔서울특별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u>필요한 기본적인 사항</u>과 ㉓「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u>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원 안	수 정 의 건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㉓「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㉔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u>필요한 기본적인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㉓「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u>위임된 사항</u>과 그 시행에 <u>필요한 사항</u>을 규정하고, ㉔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u>필요한 기본적인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_____.</p>

※ 위의 ㉓와 ㉔는 조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분을 위하여 임의로 표시한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임.
-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제처 의견(2015.6.16. 의견제시15-0136)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 i)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ii)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2) 위와 동일함, p.87~88.

개정되지 못한 경우 자치법규 해석상 법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sup>3)</sup>.

-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기초로 하는 개념들이 존재하므로, 원안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위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의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안 제2호와 같음) 2. (원안 제3호와 같음) 3. (원안 제4호와 같음)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이 조례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담당하는 책무를 명확히 정한 것임.
- 이 조례의 모델이 되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3년 해당 규정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3) 위와 동일함, p.91~92.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규정 비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전(2020)	개정 후(현행)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조)

원 안	수 정 의 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남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강남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u>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

- 안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은 도시에서 정원을 조성하는 방향이 △자유로운 접근성, △지역별 문화적 특색,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살리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안 제5조(구민 복지의 증진)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규정임.
- 안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 등)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구청장이 조성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임.
- 안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전개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일부 내용과 동일함.

- 안 제8조(구민 참여의 원칙)은 구민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고, 정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내용과 유사함.
- 안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은 강남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장려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유사함.
  - 상위법령에 정원 전문가 교육을 위한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보임.
  - ‘정원문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정의 규정에 정해진 내용이 없고,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9에서는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진흥사업’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수목원정원법의 진흥사업 추진 관련 규정 >

수목원정원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생략)  1.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생략)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2. 다양한 <b>진흥사업</b> 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를 검토하기에 앞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부터 살펴보기로 함.
- 안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및 지원)은 구청장이 강남정원사 교육과정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임.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6과 제18조의17에 따르면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신청한 후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함.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10에서 이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별표3의2에 정하였고, 해당 별표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따르면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육시설, △강사 확보, △이론 및 실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갖추었음을 입증하여야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될 수 있음.
  - 강남구는 ①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게 강남정원사 교육과정을 위탁할지, ②소양교육을 위한 일반 교육기관에게 위탁할지 여부를 논의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례안 전후 규정을 비교하였을 때 ‘교육과정’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붙여쓰기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안 제10조(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은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강남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고, 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

남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와 유사함.

-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강남정원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8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 범위 내에 있는 활동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두 가지 존재함.

#### [1] 교육과정의 성격

- 지역을 알리는 문화 또는 취미생활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법정 정원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도 있음.
- 그런데 법정 정원 전문가는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상 100시간 이상의 이론수업과 250시간 이상의 실습수업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정원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므로, 구청장이 개설하는 강남정원사 교육과정은 강남구 안에서의 활동을 인정하는 수준인 일종의 소양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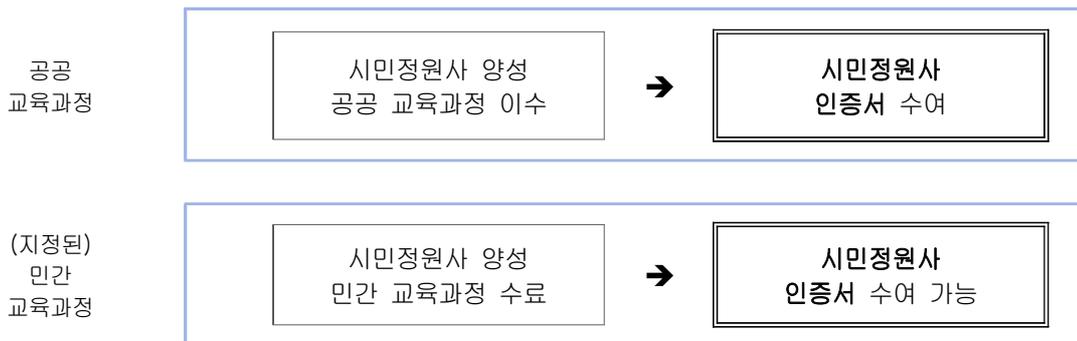
#### [2] 인증제도 운영

- 안 제10조제2항에서 이미 ‘강남정원사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활동(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완료한 후 다시 ‘강남정원사 수료증’을 받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임.
-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출석하여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수료’라고 지칭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인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료증과 인증서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전문가 인증제도’와 서울특별시의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되었고, △정원사 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자격 요건 완화, △실습 환경 제약, △정원 전문가 제도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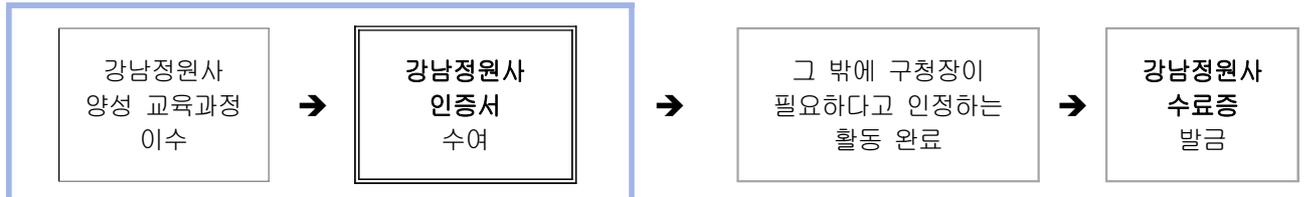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현행) >



- 위의 서울특별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공공·민간 구분)와 달리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강남정원사 인증제도는 여러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강남정원사 인증제도에서 인증서 수여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인증→수료)은 i)교육과정 수료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통상적인 개념(수료→인증)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보이고, ii)관리책임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인증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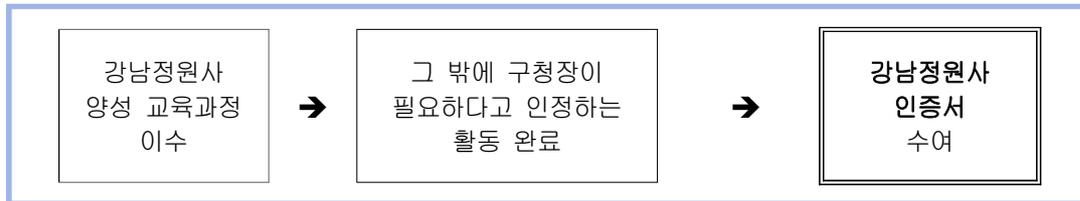
업무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iii)구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원안에 따른) 강남정원사 교육과정 인증 절차 >



↓ (비교)

< (수정의견) 강남정원사 교육과정 인증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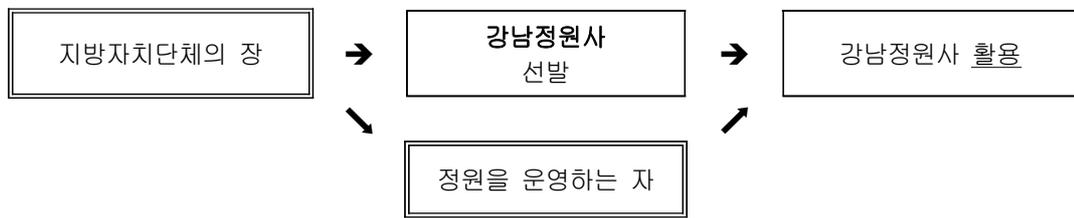


- 그러므로 인증서 수여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이수 후 일정한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되, 이에 따라 발급되는 증빙 서류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강남정원사 인증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서울특별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와 비교하면 다음 [표]에서 □ 표시 안에 있는 부분에 인증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부서가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임.
- 위와 같이 인증제도가 정리된다면, 수수료가 언급되었던 원안 제4항의 위치에는 강남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규정(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을 추가하고, 관련 사항을 향후 시행규칙에 연계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은 구청장이 강남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 운영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이 내용은 법 제18조의18 및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유사하지만, 수목원정원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와 달리 안 제11조에서는 강남정원사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락되어 있음.

< 상위법령에 따른 정원 전문가 선발 및 활용 절차 >



※ 수목원정원법에서는 정원 전문가 활용이라는 문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

- 강남정원사를 활용하는 주체가 정원 운영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문구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강남정원사의 운용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 ----- ----- --- <u>경우</u> ----- <u>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남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u>

- 안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성격, 수행 사업, 사

무의 위탁, 비용의 예산 지원 등을 정한 것임.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정원지원센터는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9에서 규정하는 법정 정원지원센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시중단되었던 이력이 있다는 점, △여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국제기구가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유로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정부는 수목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각 지역별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점, △이미 각 지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자치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 정당성이 인정되어 이미 산림청은 해당 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는 점 등<sup>4)</sup>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안 제13조제2항에서 정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비교하면 용어 차이 등으로 적용 범위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령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4)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정원담당(042-481-4248).

**< 수목원정원법의 정원지원센터 업무 관련 규정 >**

수목원정원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2호, 2024. 1. 2., 일부개정]

- ① (생 략)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u>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u>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u>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 안 제13조제3항의 경우 하나의 항에서 ‘사무의 위탁’ 과 ‘비용의 지원’ 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어, 각 항은 하나의 주제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령 문장 작성 기준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규정하려는 사항이 한 문장 안에 뒤섞여 있는 경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법령 문장은 간결성을 중시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제3항은 ‘사무의 위탁’ 을 주제로 구성하고, ‘비용의 지원’ 에 대해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함.

**<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건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u>①있으며,</u> <u>②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u>①있다.</u> <u>④ ②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 위의 ①과 ②는 조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분을 위하여 임의로 표시한 것임.

○ **안 제14조(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는 구청장이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박람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해당 평가의 원칙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음.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르면 자치구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 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정원 박람회를 직접 개최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문제없다고 생각됨.
- 정원 박람회에 대한 외부 평가 또는 내부 평가의 상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관리책임부서에게 확인해주시면 좋겠음.

○ **안 제15조(시행규칙)**은 현재는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 계획이나 구성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인증서 발급 대상, 발급 절차, 발급 요건 등)을 포함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 종합 의견

### ○ 조례의 제정

- 수목원정원법은 개정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관부서 지정(예: 산림청이 소관부서로 지정되어야 하는가), 용어 정의(예: 정원에 포함되는 개념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사항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여 다양한 쟁점과 찬반 논의가 있었음<sup>5)</sup>. 이에 따라 사소한 개념이라도 용어 정의에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조례의 시행 전에 각 규정을 수정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됨.

### ○ 인증제도의 운영

- 앞서 살펴본대로 강남정원사 인증제도 교육과정 이수 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임.

### ○ 예산의 집행

-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강남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위탁, △강남정원사 인증제도 운영,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 등은 가능하다고 보임.
-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액 구비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자료 참조.

## ※ 관계 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희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23호]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정원전문가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4. 10. 기준)

지방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2024.05.20.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노원구	2024.11.0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중구	2024.07.19.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성동구	2024.05.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2022.12.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강동구	2020.12.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구로구	2023.03.0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11. 26.)

- 질 의 : 조문에 규정된 정원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공간은 확보되었나. 센터운영 방식은 어떻게 계획 중인가
- 답 변 : 현재 강남구의 공원에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도 있음. 힐링숲 1단계 구간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신축할 필요가 없음. 내년 초에는 위탁관리로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구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
- 질 의 : 강남정원사 교육과정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후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답 변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몇 자치구에서 위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고 1억 1600만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함. 사업을 시행·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조정할 것임

## 7. 토론 요지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규정 및 용어에 조문을 수정·정비하고, 조문의 간결·명확성 도모를 위해 입법형식을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448호

발의일자 : 2024. 11. 26.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수정함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및 용어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함
- 간결·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항을 분리하여 수정함

## 2. 수정내용

- 조례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목적 조문의 문구를 수정함(안 제1조)
- 조례에 규정하는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제6호)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함(안 제3조)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용어와 시행 중인 제도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문구와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간결·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항을 분리하여 수정함(안 제13조제3항, 제4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강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을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로, “마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원문화 사업”을 “진흥 사업”으로 한다.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제10조제2항 중 “인증서를”을 “수료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료증을”을

“인증서를”로 한다.

제11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운용하거나”를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남정원사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민간 교육 과정의 위탁 등)”을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정원”을 “정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강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u></p>	<p>제1조(목적)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 -----.</p> <p>제2조(정의) ----- -----.</p> <p>1. ~ 4. (원안과 같음)</p> <p>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p> <p>6.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 -----</p>

남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강남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3. (생략)
- ② (생략)

제10조(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강남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을 완료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 마  
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  
-----.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  
-----  
-----  
-----.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2. ----- 진흥사업-----  
-----
3. (원안과 같음)
-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 ① (원안과 같음)
- ② ----- 수  
료증을 -----  
-----.
- ③ (원안과 같음)
- ④ -----  
-----  
----- 인증서를 -----.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교육 과정의 위탁 등) ① ~ ③ (생략)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 4.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 -----  
-----  
----- 경우 -----  
-----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남정원사를 -----  
-----.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1. 정원산업-----

2. ~ 4. (원안과 같음)

③ -----  
-----  
-----  
----- 있다. <후단 삭제>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강남정원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강남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강남구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국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국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강남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2.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강남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강남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남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강남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을 완료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남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남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 과정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자체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48
----------	-----

제출연월일: 2024. 11. 4.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공원녹지과

## 1. 제안이유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5조)

다.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문화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9조)

라. 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11조)

마.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 사항 없음

(1) 입법예고(2024. 09. 13.~2024. 10. 3.) : 특이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강남정원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남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강남구에 구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강남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강남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강남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강남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남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강남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을 완료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강남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교육 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 과정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자체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2025년 본예산 편성액 기준 산출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 고
총 액	116,900	▶전액 구비
강남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116,900	▶전액 구비

### 4.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8급 성명 이지혜(02-3423-6257)